

	<u>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	
제23조의3 (채무조정 요청)	제23조의3 (채무조정 요청)	
① ~ ② (신 설)	<p><u>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(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</u></p>	개인채무자보호법령 반영 (채무조정 요청 근거 명시)